

5-9-76	중대재해법 관련, 전담조직 구성 및 민간전문가 참여운영		
추진부서	안전정책과 중대재해팀	협조 부서/ 기관/단체	행정과
	안전정책과장 김인태(☎ 3540)/ 팀장 연충석(☎3546)/ 오유진(☎3547)	협조내용	조직구성

사업 기간	임기 내 완료 ●	사업 구분	신규사업 ●	사업 성격	예산 ●	사업비 구분	국비	도비
	임기 후 계속		계속사업		비예산		군비 ●	기타

□ 현황 및 정책목표

[현황]

- 전담조직 구성 의무
 - 「중대재해법 시행령」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.
- 중대재해법 상 안전·보건 담당 부서 현황

부서	업무	인원	비고
안전정책과 (중대재해팀)	·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 ·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	2(팀장 1, 담당자 1)	
행정과(행정팀)	· 산업안전보건법 업무	2(팀장 1, 담당자 1)	

[정책목표]

- 중대재해법 상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및 민간전문가의 법률자문 등 협의회 구성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 ~ 2026
- 사업내용
 - 중대재해 전담조직 구성(팀장 1, 팀원 2)
 - 중대재해협의회 구성(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자문·협의)

□ 투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계	기투자	임 기 내					임기 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
계	20			5	5	5	5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군 비	20			5	5	5	5	
기 타								

□ 추진계획

○ 중대재해 전담조직 구성(안)

직위·직급	담당 주요 업무
행정6급(팀장)	○ 중대재해업무 총괄
시설7급	○ 중대재해업무 - 중대(산업+시민)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 -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
보건8급	○ 산업안전보건법 업무

○ 중대재해협의회 구성(안)

- 위원수 : 12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9명)
- 당연직 : 부군수, 중대재해팀 담당국장, 중대재해팀 담당과장
- 위촉직

시민재해(5)	+	산업재해(4)
방재, 안전, 소방, 건축, 토목분야 전문가		산재, 노동, 보건, 의료분야 전문가

□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

연도별	추진 사항 (연도별 목표)	비고(진도율)	
임기내	2022년	중대재해 전담 조직 구성	40%
	2023년	중대재해협의회 구성 및 운영	70%
	2024년	중대재해협의회 운영	80%
	2025년	〃	90%
	2026년	〃	100%

□ 기대효과
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관리 및 대응 조직 구축
- 민간전문가 자문·협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